

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6. 2. 27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6년 2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1996년 2월 14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2회 충청북도임시회

제1차 교육사회위원회('96. 2. 27)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중등교육국장 전 태 식)

가. 제 안 이 유

'95. 1. 1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 요 골 지

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농업고등학교 위치란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상당구"로 하고,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"청주시"를 "청주시 상당구"로, 충북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"청주시"를 청주시 흥덕구"로 변경함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본 조례안은

청주시 구설치에 관한 조례 (청주시 조례 제1,795호, 1994. 12. 30)가 제정되었고
'95. 1. 1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
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 의 및 답 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조 례 안 : 별 첨

9. 신·구조문 대비 표: 별 첨